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833

발의연월일: 2024. 10. 23.

발 의 자:김 현·박해철·이훈기

한민수 · 임미애 · 박민규

김우영 • 조인철 • 정동영

이정헌 • 박홍배 • 전용기

임호선 · 서영석 · 김재원

민형배 • 문금주 • 송재봉

최민희 • 추미애 • 신영대

양부남 · 김영화 · 염태영

김태년 의원(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인 알뜰폰(MVNO)은 도입된지 10년 이상 경과하여, 최근에는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약 20%를 점유하는 등 시장 경쟁의 한 축으로 성장하였음.

하지만 알뜰폰 시장의 내면을 살펴보면, 여전히 이통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절반 수준에 육박하며, 최근에는 KB국민은행을 필두로 시중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이 차례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거대 자본의알뜰폰 시장 장악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그로 인해 경쟁에서 내몰린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기업 알뜰폰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고, 특히 이통사들이 자회사를 통한 우회적 수

단으로 알뜰폰 시장을 좌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도입 필요 성이 대두됨.

이에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인 알뜰폰 사업자(MVNO)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자회사 MVNO 개수를 제한하여 독립 MVNO 인수나자회사의 신규진입을 금지하며, 재판매 사업자의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중소 알뜰폰 사업자 및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재판매 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① 대기업(「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 다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재판매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의 가입자 수의 합이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시장 전체 가입자 수의 5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는 신규 가입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물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수는 가입자 비율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재판매 사업자 중에서 대기업 계열사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입자 수의 산출 및

재판매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재판매 사업자의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매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4조제1항제5호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대기업"으로,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계열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0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4. (생 략)
-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 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u>가입자</u>	비율의	산정에서	제외
<u>한다.</u>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재판매 사업자 중에서 대기업 계열사 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입자 수의 산 출 및 재판매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재판매 사업 자의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 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매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 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 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4조(과태료) ①	
1 ~ <i>4</i> (혀해과	간 은)

- 5. 대기업-----<u>계열사</u>-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전기통신사업자 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 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 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 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 다)로서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6. · 7. (생략) ② ~ ⑥ (생략)

6. · 7. (현행과 같음)② ~ ⑥ (현행과 같음)